

□ 제27조(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)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하며,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납기를 전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, 보증금은 수시 또는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한다.

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미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.

□ 제28조(공공하수도 점용료)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하되,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액으로 산정한다. <개정 2016. 5. 19.>

③ 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 분을 당해년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, 점용허가시에 당해년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.

④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산정하여 징수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절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5. 19.>

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□ 제29조(특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·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<개정 2009. 11. 11., 2016. 5. 19.>

1. 오수발생량은 「하수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.)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
2. 별표 5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 다만,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에서 그 설치용량 만큼 공제한다.

가. 신축·증축·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$10m^3$ /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

나.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·증축·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$10m^3$ /일 이상인 경우 $10m^3$ /일을 초과하는 양

3.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.

4. 오수발생량 $1m^3$ /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5.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(m^3 /일)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(원/ m^3 /일)를 곱하여 산정한다.

6.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, 증축, 개축·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·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(임시사용승인 포함)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.

나. 징수(납부)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시에 하고,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·허가 또는 승인 시에 한다.

② 제31조에 따른 탄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탄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·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